

주요수당 및 출장여비 자체점검결과

점검개요

- 부서명 :
- 점검기간 :
- 점검자 : 직급 성명 (인)
- 확인자 : 직급 성명 (인) ※ 부서장

점검결과

- 가족수당 (단위 : 천, 원)

자체점검 주요내역	부당지급내역		소급지급 주요내역	소급지급내역	
	건수	환수액		건수	지급액
소계			소계		
사유①			사유①		
사유②			사유②		
사유③			사유③		
사유④			사유④		

- 자녀학비보조수당 (단위 : 천, 원)

자체점검 주요내역	부당지급내역		소급지급 주요내역	소급지급내역	
	건수	환수액		건수	지급액
소계			소계		
사유①			사유①		
사유②			사유②		
사유③			사유③		
사유④			사유④		

○ 출장여비

- 2014년 출장여비 지급현황

- ▶ 작성내용 : 관내 출장여비(관외, 교육여비 제외)
 - ▶ 작성대상 : 전체 공무원(실무수습, 청원경찰 등 기타직 제외)
 - ▶ 작성방법
 - 수령인원(a) : 월 중 한 번 이상 수령한 경우 1명으로 카운팅함
 - 총수령액(b) : 월 총지급액
 - 1인 최고수령액 : 해당월 중 개인의 최고 지급액
 - 1인 최저수령액 : 해당월 중 개인의 최저 지급액(지급된 자 중 최저액이며 '0'원 아님)
 - 출장사유 : 사회복지시설점검 등 주요 사유 2~3가지 기재
 - 미지급 인원 : 부서 현원에서 수령인원(a)를 제외한 인원
- * '계'에서는 12개월 중 최고 및 최저 지급액으로 작성

(단위 : 천원)

기 간	수령인원(a)	총수령액(b)	1인 평균 수령액(b/a)	1인 최고수령액	1인 최저수령액	출장사유	미지급인원
계	0	0		※ 12월 중 최고수령액	※ 12월 중 최저수령액		
'14. 1월							
'14. 2월							
'14. 3월							
'14. 4월							
'14. 5월							
'14. 6월							
'14. 7월							
'14. 8월							
'14. 9월							
'14.10월							
'14.11월							
'14.12월							

- 출장여비 점검결과

(단위 : 건, 원)

자체점검 주요내역	부당지급내역		소급지급 주요내역	소급지급내역	
	건수	환수액		건수	지급액
소계			소계		
사유①			사유①		
사유②			사유②		
사유③			사유③		
사유④			사유④		

○ 초과근무수당

(단위 : 건, 원)

자체점검 주요내역	건수	환수액		
		계	부당수령액	가산금
소계				
사유①				
사유②				
사유③				
사유④				

부당지급 및 소급지급 주요사유

○ 가족수당

구분	부당지급	소계	소급지급
사유①	부양가족과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또는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(ex: 부양가족의 주소지 전출, 사망, 자녀의 연령도과,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였으나 지급 등)	사유①	'08년부터 셋째 자녀에 대해 가산금을 지급 가능함에도 미지급
사유②	부양가족과 동일주소이나 세대가 분리된 경우	사유②	'07년부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지급인원 제한이 해제되어 지급 가능함에도 미지급한 경우
사유③	부부 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부부 모두에게 지급	사유③	본래 가족수당 지급요건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었음에도 미신고한 경우
사유④	기타(급여담당자 전산 착오로 지급 등)	사유④	기타(급여담당자 전산 착오로 지급 등)

○ 자녀학비보조수당(※ 소급지급사유는 부당지급사유별로 반대될 경우 기재)

구분	부당지급
사유①	퇴학, 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
사유②	부부공무원의 경우, 부부공무원 모두에게 지급
사유③	부부 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부부 모두에게 지급
사유④	기타(면직된 공무원에게 전액 지급, 급여담당자 전산착오지급, 실제 납부액이 아닌 지급상한액으로 지급 등)

○ 출장여비(※ 소급지급사유는 부당지급사유별로 반대될 경우 기재)

구분	부당지급
사유①	출장시간 4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기준이상 일비지급
사유②	업무택시, 관용차량을 이용했는데도 1만원을 감하지 않고 지급
사유③	상시 출장자 월 출장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상시출장비 전액지급
사유④	기타(상시출장 대상이 아닌 자에게 상시출장비 지급, 급여담당자 전산착오로 인한 지급 등)

○ 초과근무수당

구분	부당지급
사유①	연가, 교육, 출장, 당직근무 중 초과근무체크
사유②	대리로 초과근무체크
사유③	담당자 착오지급
사유④	기타(사유기재)